



보도자료

▶ 보험운영지원팀장 조병기
보험운영지원팀 이창열사무관

TEL : 502-6631

E-MAIL : unem@chollian.net

FAX : 502-8219

- ▶ 2006. 11. 3 배포
- ▶ 총 2 쪽 (사진없음)

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역 빠짐없이 신고하세요

- 노동부, 11.6~12.8 「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집중정리기간」 운영키로
- 근로내역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-

-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역을 신고하여야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이에, 노동부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 달 동안을 「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집중정리기간」으로 설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, 근로일 등 근로내역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.
 - 따라서,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했거나,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다음달 8일까지 그간 신고하지 못한 근로내역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.
 - 신고는 사업주는 물론 당해 근로자가 스스로 하여도 된다.
- 또한, 이번 집중정리기간 중에는 올 7월까지 고용보험 성립된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현장 중 근로내역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약 1,000여개 현장에 대하여 현장 지도·감독이 이루어진다.

- 지방노동관서 관계 직원이 건설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개별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철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거나 직권으로 근로내역 신고조치를 할 예정이다.
- 노동부는 이들 건설현장이 다음달 20일까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해주나,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.
-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근로내역을 신고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월평균 44만명으로, '06년 6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(건설일용근로자 76만 여명)와 비교할 시 많은 근로자가 현재까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조정호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은 “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건설일용근로자가 실업상태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” 며
 - “이번에 건설일용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동절기를 앞두고, 근로내역 신고 누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”이라고 말했다.
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취득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(<http://www.ei.go.kr>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
 - 노동부 종합상담센터(☎1544-1350) 또는 고용지원센터(☎1588-1919)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